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6.9.28.)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창 원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28.(월)
기 획 행 정 위 원 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6. 8. 26.

나. 제 출 자: 창원시장

다. 회부일자: 2026. 8. 27. (의안번호 제51호)

라. 상정 및 의결: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6.9.28.)

2. 제안설명 요지 (이유정 자치행정국장)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사업부지로 편입되는 토지가 2개의 행정동(석전·회성)과 3개의 법정동(석전·두척·회성)에 걸쳐 있어, 토지 관리·이용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입 토지 일부 구역의 행정동과 법정동을 각각 회성동으로 변경하고, 지번의 표시 방식과 문장 부호의 사용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별표)

구	행정동(법정동)		필지	면적(㎡)
	기 존	변 경		
마산회원구	회성동(**두척동**)	회성동(**회성동**)	165	113,087.0
	석전동(석전동)	**회성동**(회성동)	32	51,304.8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등 (안건책자 참조)

4. 검토 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 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사업부지로 편입되는 토지가 복수의 행정동과 법정동에 걸쳐 있어, 해당 토지의 행정구역을 정비하고 지번 표기 방식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마산회원구 내 사업부지에 포함된 197필지, 164,391.8㎡에 대하여 행정동과 법정동을 각각 회성동으로 조정하고, 그 밖에 지번의 표시 방식과 문장 부호 등을 정비하는 것임.

□ 종합 의견

○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가 현행 행정구역상 복수의 행정동 및 법정동에 걸쳐 있어, 사업부지 내 토지가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상황임. 이에 사업부지의 행정구역을 회성동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이용 현황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토지 관리 및 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로 볼 수 있음.

○ 특히 행정동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구역이고, 법정동은 토지대장·등기 등 토지의 공적 관리 및 주소체계 등에 활용되는 법정 구역인 만큼, 사업부지의 행정동과 법정동을 함께 조정하여 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은 토지의 관리 및 이용 측면에서 행정구역의 명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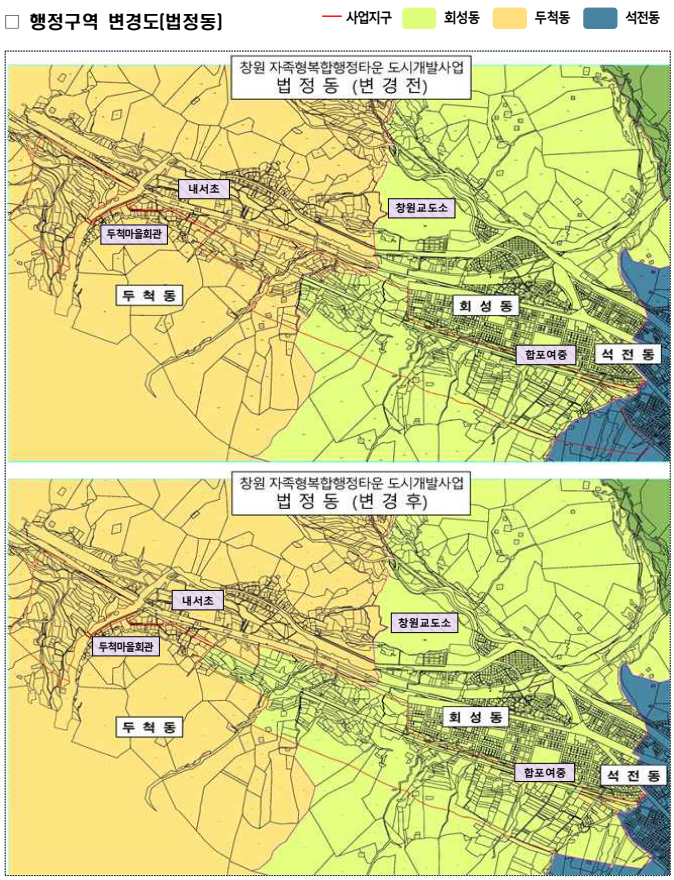
○ 또한,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변경되는 구역을 반영하여 지번 표기 방식과 문장 부호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구역 표시를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구 분	현행 조례	개정안
지번 표기	석전동 22**의**4	석전동 22-4
문장 부호	석전동 195-197	석전동 195~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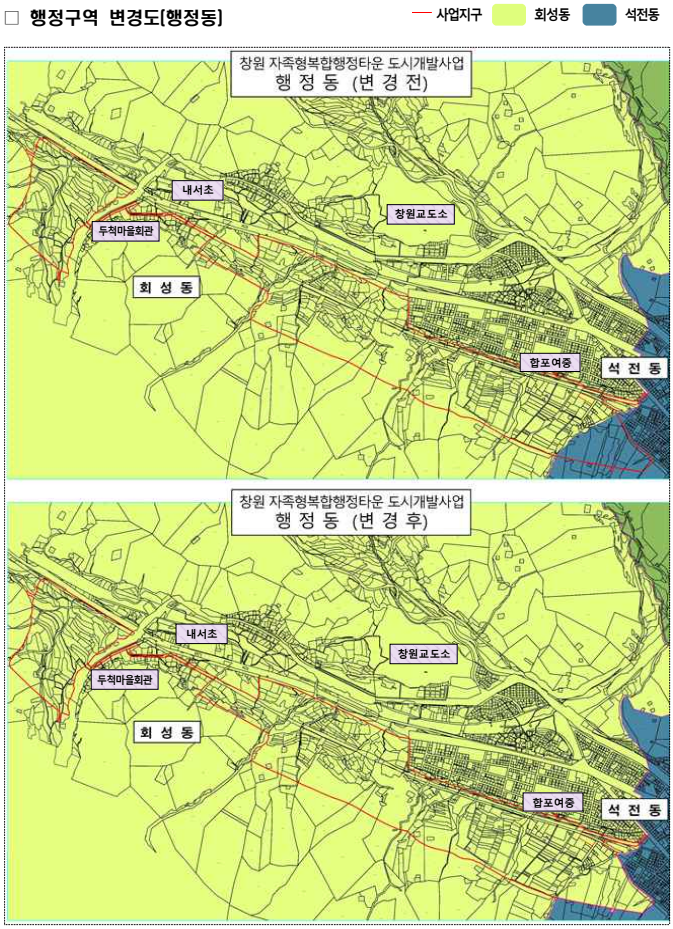
○ 따라서, 본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관리 여건을 반영하여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지번 표기 및 문장 부호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 고 행정구역 조정도면

□ 행정구역 변경도(법정동)



□ 행정구역 변경도(행정동)



5. 질의 · 답변 요지: 기재 생략

6. 토론 요지: 기재 생략

7. 심사 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건의 사항, 촉구사항 등): 없음